

정 관

(신)

학 교 법 인 계 립 학 원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과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계림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
-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정명고등학교
 2. 경기경영고등학교
-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0(심곡본동)에 둔다.
-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 제 12 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 위원회

- 제 13 조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 제 14 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 제 15 조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삭제"
- 제 16 조 【회의】 "삭제"
- 제 17 조 【위원회의 간사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한다)
- 감사 2인
-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년

2. 감 사 :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개방이사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학부모, 동문 및 외부 인사이어야 한다.

제 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현황과 회계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 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이사회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이내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의 2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삭제"

제 31 조의 3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지 임대사업
2. 건물 임대사업
3. 주식 투자사업

제 33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체를 경영한다.

제 34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0(심곡본동)에 둔다.

제 35 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 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관할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 에게 귀속된다.

제 38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 39 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⑥ 교감은 학교의 장의 재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⑦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단, 해당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교사 결원이 없을 경우 교감 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1. 해당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교사 결원이 있을 것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정관 제39조에 따라 학교법인 계림학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

제 39 조의 2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

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54조의 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 한다.

⑤ 학교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장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에,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 39 조의 4 【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39 조의 5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39 조의 6 【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 39 조의 7 【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0 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7-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제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

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될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삼입한다.

제 41 조 【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2. 제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로 한다.

11.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 또는 교원직무연수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 43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의 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

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45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고에 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사유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조의 2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 47 조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8 조 【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9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조직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감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외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4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 징계 위원회

제 55 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외부인

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외부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2조의 2를 준용한다.

제 56 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 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58 조 【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8 조의 2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8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이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9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0 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분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1 조 【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2 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3 조 【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 심 위 원 회

제 64 조 내지 제 77 조 【삭제】 (개정 1991. 9. 18)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 78 조 【자격】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79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80 조 【복무】 “삭 제”

제 81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 82 조 【신분보장】 “삭 제”

제 82 조의2 【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사무직원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 82 조의3 【공로연수】 ① 본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이 6개월 남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로연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 83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3 조의2 【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제 83조의3 【당연퇴직】 제79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에 따라 임용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4 조 【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실을 두며, 실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 85 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6 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 87 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7 조의2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 사무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과 지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제 88 조 【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9 조 【위원회 설치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90 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 “삭제”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91 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2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1 조의2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정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가. 정명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 2인

나. 경기경영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 2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1 조의3 【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92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3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여부 및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94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95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4. 위원이 제9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96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7 조 【간 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98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99 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0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2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3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들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6조 【운영경비 등】위원의 연수 경비,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7조 【위임 규정】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교원에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는 영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정명고등학교 및 경기경영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정명고등학교안전공제회 및 경기경영고등학교 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 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0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1조 【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4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8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20조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기신문에 공고한다.

제12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이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용창	1944. 3.24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APT 2-504
이 사	이규영	1922. 2.15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3-14
이 사	김동석	1940. 2.16	4	-
이 사	최창규	1905.08.21	4	-
이 사	김용진	1948.01.20	4	-
이 사	김태길	1942.08.28	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삼익아파트 2동 101
이 사	최영이	1940.12.19	4	서울 관악구 상도1동 247-6
감 사	조한익	1921.12.20	2	서울 강남구 청담동 64번지 (5/6) 효성빌라 32-205
감 사	이재만	1944.12.28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43

부 칙 (1990.12.19)

1. 【시행안】 이 정관은 1990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교원 징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5.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1. 9.18)

1. 이 정관은 199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64조 내지 제77조, 제83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정관 제39조의 3 규정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3. 이 정관 제39조의 4 규정은 1996년 11월 4일부터 적용한다.
4. 이 정관 제19조 내지 제39조의 2,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22일 부터 적용한다.
5. 이 정관 제2조의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

1.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 92조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 제2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 3 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6항에 개정사항은 이 정관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정 명 고 등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3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1명
기술직군 소계				1명
일반직 합계				6명

<<별표2-1>>

경 기 경 영 고 등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3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1명
기술직군 소계				1명
일반직 합계				6명